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2일, 서명옥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1.22.)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명옥의원)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 3,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절주문화를 조성하고 음주폐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는 2021년 기준 14억 6,27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보다 매년 약 3조원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2025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음주폐해 예방관련사업은 0.56%에 불과하여 국가금연지

원서비스 52.8%에 비해 현저히 비중이 적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조사·연구등을 촉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 내용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법적 시스템을 보완하여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음주폐해 관련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